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57호
------	------

2019년 12월 2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8월 7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 다. 상정결과 :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년 11월 26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문화본부장 유연식)

가. 제안이유

- 서울시는 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을 설립하고 법인의 운영 및 시설관리, 공연예술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 이에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사업개요

1) 사 무 명 :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2)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3) 필 요 성 : 서울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공연, 전시, 세종 문화회관 운영 등 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

4) 사무내용

- 세종문화회관의 운영
-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 그 밖의 문화예술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위탁하는 사업

(2)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기관 개요

1)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2) 규 모 : 대지 55,758 m^2 , 건물 63,396 m^2 (지하 3층, 지상 6층)

- 공연장(세종대극장, M씨어터, 체임버홀, S씨어터), 전시관(세종

미술관, 세종충무공이야기), 교육시설(세종예술아카데미) 등

3) 전경 및 위치도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¹⁾에 의거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세종문화회관의 출연여부에 대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음.

나. 출연의 필요성

- 세종문화회관은 문화예술 사업 운영 등을 통하여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문화복지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음.

연도별 세종문화회관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안)
예산 규모	43,655	49,106	50,119	53,764	55,779
전년대비 증감액	2,191	5,451	1,013	3,645	2,015
전년대비 증감률	5.3%	12.5%	2.1%	7.3%	3.7%

다. 출연규모의 적정성

- 2020년도 세종문화회관 출연금은 358억 5,255만원으로 2019년 출연금 328억 3,055만원 대비 9.2%인 30억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는 2014년 5월 28일 개정되어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 규정임.

2,200만원이 증가하였음.

(단위: 천원)

사 업 명	2018년		2019년		2020년(안)	
	세입	세출	세입	세출	세입	세출
계	50,119,027	50,119,027	53,763,950	53,763,950	55,778,870	55,778,870
영업수익/사업비	15,582,680	15,302,594	14,573,443	15,745,003	13,731,181	16,097,649
공연사업	6,692,328	7,773,425	7,350,732	8,189,724	7,383,029	11,611,700
전시사업	373,000	644,767	404,950	675,447	470,846	778,528
기획사업	180,000	176,580	60,000	80,200	0	397,200
교육사업	320,805	1,098,925	348,680	1,139,550	506,830	1,232,550
대관사업	3,028,760	940,000	2,846,388	1,000,000	2,991,936	1,100,000
시설운영사업	2,355,500	606,610	1,325,351	727,320	1,250,851	604,000
북서울꿈의숲운영	2,262,287	4,062,287	2,032,762	3,932,762	923,109	373,671
대행사업	370,000	-	204,580	-	204,580	-
영업외수익	3,369,056	-	3,447,500	-	3,792,000	-
출연금	28,826,000	-	32,830,545	-	35,852,545	-
잉여금	2,341,291	-	2,912,462	-	2,403,144	-
일반관리비	-	34,573,911	-	36,280,485	-	39,681,221
인건비	-	22,232,845	-	24,305,070	-	26,240,953
성과급	-	1,389,870	-	1,126,544	-	987,643
경비	-	10,951,196	-	10,848,871	-	12,452,625
예비비	-	242,522	-	1,738,462	-	0

- 세종문화회관 사업의 경우 대부분 서울시 출연금을 기초로 운영되며 그 사업의 내용은 공연, 전시, 기획, 교육, 대관, 시설 운영, 북서울꿈의숲운영, 대행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세종문화회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극장이자 최고의 제작극장으로 국악과 무용·합창·뮤지컬·연극·오페라 등 각 장르를 대표하는 예술단체가 있으며 어린이와 청년들로 구성된 예술단까지 9개의 산하 예술단 운영을 통해 문화다양성 증진에 힘쓰고 있음.
- 세종문화회관은 공공극장으로서 공연장르에 대한 정체성은 확보하였으나, 예술의 전당이나 국립극장 등 다른 공공극장에 비하

여 전시 사업에 대한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임. 자체 기획전시 부족과 전시 관련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2018년에는 전시 이틀 전에 갑자기 전시가 취소되는 등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을 뿐 아니라. 세종문화회관의 공공극장으로서의 명성에 피해를 주었음.

- 세종문화회관은 출연금을 통해 세입예산의 현실화, 자원조성(협찬, 기부)강화, 사업규모 확대(예술단공연, 기획공연, 전시사업), 예술단 대표 레퍼토리 개발, 통합공연 연례화 추진, 해외 문화예술교류 확대, 정책사업 추진 예산(광화문광장 재조성,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대책 등)을 확보하는 등
- 더 많은 시민이 세종문화회관을 찾고 다양한 양질의 공연을 향유하고 예술가와 예술단체가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957
----------	-----

제출년월일 : 2019년 8월 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을 설립하고 법인의 운영 및 시설관리, 공연예술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 나. 이에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1) 사 무 명 :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 2)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 3) 필 요 성 : 서울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공연, 전시, 세종문화회관 운영 등 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

4) 사무내용

- 세종문화회관의 운영
-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 그 밖의 문화예술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나.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기관 개요

1)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2) 규 모 : 대지 55,758 m^2 , 건물 63,396 m^2 (지하 3층, 지상 6층)

- 공연장(세종대극장, M씨어터, 체임버홀, S씨어터), 전시관(세종미술관, 세종충무공이야기), 교육시설(세종예술아카데미) 등

3) 전경 및 위치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문화정책과 문화협력팀 정민호 (☎ 2133-2527)